

**장애인 체육회**

**체육유공자 포상금 지급규정**



# 장애인체육회 체육유공자 포상금 지급 규정

제정 2015.01.19.

개정 2015.01.10.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이하 “장애인체육회” 라 한다)의 체육유공자 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포상금”이란 장애인체육 유공자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권장하는 지급금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선수·지도자 및 경기단체(이하 “선수 등” 이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단, 생활체육대회는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장애인올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입상선수.
2. IPC가 공인한 종목별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4년 주기).
3.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 입상선수.
4. 기타 공인 국제대회 입상선수(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한 대회)
5.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입상선수·지도자 및 경기단체.

## 제4조 (메달산정 기준)

-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획득한 메달수의 산정기준은 제3조에 규정된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수상메달에 한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 포상금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대회의 중요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지급절차)

- ① 제2조의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선수 등은 대회 입상을 증명 할 수 있는 공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입상일 또는 귀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애인체육회에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직접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 ② 포상금은 수령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지급액 조정) 포상금은 장애인체육회 예산 사정에 따라 증감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015.01.19.)

이 규정은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015.01.10.)

< 별표 1 >

## 포상금 지급 기준표

1. 국제규모대회 입상

(단위 : 천원)

대 회 명	포 상 기 준		
	금	은	동
가. 장애인올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2,000	1,500	1,000
나. 종목별 장애인세계선수권 (4년 주기) 및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	1,000	700	500
다. 기타 공인 국제대회 (단, 친선대회는 제외)	300	200	100

2.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입상

(단위 : 천원)

기 준	포 상 기 준		
	금	은	동
가. 입상선수 개인 및 단체(팀)	500	300	200
나. 입상선수 지도자	500	300	200

1) 입상 단체종목에 한하여 특별 포상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① 10명 이상 종목 : 1,000천원
- ② 10명 미만 5명 이상 종목 : 500천원
- ③ 5명 미만 3명 이상 종목 : 300천원

가. 단, 개인종목 중복참가 가능 단체전은 특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함.

나. 입상선수에 한해 올림픽 및 세계신기록 수립선수에게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인 동메달에 준하는 특별포상금을 1회 지급할 수 있다.

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동호인부로 출전하여 입상하였을시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 기준의 60% 이상을 지급 할 수 있다.(2017.01.10. 개정)

라. 시범종목, 전시종목은 포상금을 제외한다.

2) 단체(팀)종목 지도자의 경우 입상포상금은 입상선수 포상금액과 동일금액으로 한다.

3) 단체경기 시상인원은 최종 참가신청서의 등록선수에 의한다.

4) 선수가 다관왕 등으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였을 경우 획득 메달 포상금의 누적 합산 금액으로 한다.

5) 입상선수 지도자의 경우 금메달 및 수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을 경우에는 최상위 입상 성적의 포상금 금액으로 한다.

6)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관련 포상금은 시 교육청과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한다.

